

# 국제수산계가 나아가야 할 길

왕기용\*

금년 여름 섭씨 37~38℃ 폭염의 서울을 떠나 8월 5일 Norway Trondheim에 도착하니, 그곳은 Fiord 형 성지대로 위도는 높지만 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Norway 북부의 전형적인 날씨인 섭씨 15도의 시원한 기후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Norway에서 3번째 큰 도시인 Trondheim은 Norway의 5개의 큰 권역으로 나누어진 Tronde Lag 지방의 중심도시로서, 이미 977년에 Viking 왕인 Olav Tryggvason이 Nid River가 위치한 이곳에 수도를 세우고, 동쪽으로는 White Sea로부터 서쪽으로는 Green Land를 포함한 광대한 Norwegian Viking Empire를 호령했던 Norway의 첫 수도였다. 북부 유럽에서 제일 오래되고 가장 큰 규모의 고딕 대성당과 고대 Norway 왕가의 묘소를 가지고 있는 Trondheim은 또한 통신의 요충지로서 Norway라는 총 연장 1,752km의 긴 해안선의 중심지에 지렛대의 받침점에 해당한다.

Norway의 특성은 험준하고 가늘게, 길게, 널리 뻗어 있는 바다와의 친근성이며, Norway 이름 자체가 '북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의 Norwegian에서 유래 하듯 Norway극작가 Henrik Ibsen은 일찌기 Norway는 바다에 흘러 있다고 말했으며, 이런 곳에서 I.C.F.A (International Coalition of Fisheries Association) 년차 회의가 열린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 I.C.F.A (국제 수산 단체 연맹)

### 1. 년혁

I.C.F.A는 해양 오염방지, 해양 포유류동물·해조류 등의 보호를 빌미로 한 Green Peace 등 세계 환경보호 단체들의 상업, 어업 활동 억제 행동에 대항하여, 수산물 가공, 생산·유통 상업에 종사하는 어업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국제적 민간 어업기구 설립 요청에 따라 N.F.I (National Fisheries Institute)인 미국 수

산회가 주관이 되고 한국, 일본, 캐나다, 대만, 노르웨이, 독일, 아이스랜드, 뉴질랜드가 가입하여 만들어진 국제협력단체이다. 1988년 10월 Netherlands의 Amsterdam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제2차는 Spain Mardella에서, 제3차는 Italy Rome에서, 제4차는 United States Hawaii에서 개최되었다. 제5차는 Iceland Reykjavik에서 개최되었으며, 미국의 상업, 어업 대변 환경단체 및 British Observer가 추가로 참석했다. 제6차는 Taipei Fomosa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제7차 회의로 New Zealand 수산회장인 Mr. Eric Barratt가 I.C.F.A의 회장으로써 회의를 주관하였으며, 본인은 한국 원양협회 회장으로 협회 임원과 같이 1994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I.C.F.A는 그 정관에서 엿볼 수 있듯이 각국 수산단체의 효율 증대를 위하여 상호 정보 제공과 국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제도, 각 국제 단체 및 기구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회원국 정책개발 환경문제에 관련한 공동 대책을 논의하는 것을 그 중요 의제를 삼고 있다.

### 2. 각국의 관심 사항

역대 회의시 각국의 관심 사항을 잘 살펴 보면 각국이 처한 문제 및 수산업 개발·보호 강구 방향을 엿볼 수 있고 그 특기사항을 관찰할 수 있어 흥미롭다.

공통 사항으로는 국제 환경단체의 움직임, 수산물의 수출입과 연관된 위생검사제도, 자원 변동 상황,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Un 세계 식량농업기구), CITES(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de of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교역에 관한 협정), ICCAT(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 대서양 참치 보존위원회), IWC(International

\* (주)동원수산 사장, 한국 원양협회 회장(서울대학교 지리학과 3회 졸업)

Whaling Commission - 국제 포경위원회)의 동태에 관한 사항을 예의 주시 관찰하고 있다.

· 아시아국 (한국, 일본, 대만)

북 태평양에서의 NET에 의한 어로 방법인 오징어 유자망 반대를 역설하고 있는 Green Peace에 대항하여 유자망에 By-Catch에 의한 포유류동물 어획은 극히 제한된 숫자만이 포획되므로 인류 식량 자원 차원에서 해양 포유류 과보호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포경 금지 조치 등에 대한 반대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 교역에 관한 협정기구(CITES)가 아무런 과학적인 연구 및 분석 Data 없이 대서양 참다랑어를 멸종 위기에 처한 어종으로 분류하여 교역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편의 국적선(해적선)의 조업을 반대하고, 대신 대서양 참다랑어는 대서양 참치 보존 위원회(ICATT)가 자원 관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CITES가 이를 관여함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상업 포경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 하고 있다.

· 북유럽국 (Norway, Iceland)

일본과 함께 포경 금지조치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고래류는 이미 그 수위에 있어서 충분히 보호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아메리카국 (미국, 캐나다)

환경보호 단체 움직임에 민감히 동조하며, 자원보호에 역점을 두나 연근해 업자에 대한 Quota제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어획만을 역설하고 있다.

3. 제7차 Norway 회의

회의 주체국인 Norway는 노르웨이 수산인회 Finn Bergesen 회장을 통해 Norway의 지리적 특성과 해양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경계 왕래성(200 Mile 경계 수역을 중심으로 한 Line) 어족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조업해온 수역에 대해 200 Mile 바깥의 자원에 대해서도 관리권 행사가 가능해야 되겠다는 것과 해양 포유동물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 어류를 과다 소비시키고, 기생충을 번식시키는 등, 피해가 크므로 유엔에서는 포유류 동물을 확대시켜 O.Y(Optimum Yield)를 설정, 적당히 포획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나, 이

런 자원 관리요구는 Iceland와의 고래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써 Iceland와 일본측이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한국, 캐나다는 E.U 등의 남획에 대하여 200 Mile 이원 관할권 선포에 대구 자원 보존조치의 배경을 설명하고, 1994년 8월 15일부터 U.N에서 개최 되는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종에 대한 회의가 결말이 날 것 같지 않으므로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연장하여서라도 완벽한 협정문이 설정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본 대표는 200 Mile선 전체 가치가 없어지므로 200 Mile 이원 수역에 대해서는 자율, 자발, 도덕적 규제가 되어야지, 강제 규제는 찬성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WTO의 환경정책에 대해 미국 대표는 미국의 Dolphin Safe Act에 따라 남미산 참치 통조림을 수입 금지 한 것에 대하여 GATT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항소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하여 환경 문제를 무역에 연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WTO에 I.C.F.A 명의로 성명서를 발송하여 환경문제를 이유로 하여 수산물 교역 규제가 가해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주장하기로 하였다.

특히 금번 7차 회의는 주최국이 Norway인 만큼 문제인 포경어획에 대하여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대부분의 I.C.F.A 회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orway는 전통적인 포경 국가이며, 밍크고래, 핀고래 등은 연간 200 두씩 포획해도 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자원이 있으며 스스로 자원을 관리할 능력도 이미 보유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IWC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포경과 무관한 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며, 일반적인 여론은 근거가 없는 조작된 Data가 많고, IWC는 보존보호 목적으로 만든 기구가 아니라 자원의 개발 이용을 위하여 만든 기구임을 망각하고 보존만 앞세우고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일본은 노르웨이 대표에게 남빙양 포경 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해제운동 동참 의사를 표하였으며, 회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4. I.C.F.A의 앞으로의 운영방안

1982년 12월 10일 UN에서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이 만 11년 만인 1993년 11월 16일자로 60개국의

비준을 획득한 바 있어 1994년 11월 16일이 되면 그간 관습법으로만 원용되어 오던 본 협약이 명실공히 국제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1993년 11월 25일자로 FAO에서 채택된 「제3국적선 공해조업 규제협약」이 이미 캐나다의 비준을 획득하였으므로 24개국만 추가로 비준을 마치게 되면 국제 협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대기 상태에 있다.

또 UN에서는 1993년 7월 및 1994년 3월 회의에 이어 금년 8월에 제3차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관리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동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획되는 주요 어종인 참치, 연어, 대구, 명태 등에 대해 공해 조업을 포함한 보존관리 협정(또는 결의, 건의안)이 확정되면, 바야흐로 자유로운 공해 조업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사라질 단계에 와 있으며, 1993년부터 FAO에서 검토 중에 있는 「책임있는 어업 행동 강령」이 1995년말까지 성안되어 1996년에 실시 되면 상업 어업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992년말을 기하여 전세계적으로 오징어 유자망 어업을 금지 어법으로 완전히 도태시켜 버리는데 그 위력을 발휘한 그린피스나 오도반, 동물보호 단체 등의 상업어업 반대 움직임에 추가하여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의 UN회의에서 채택된 「생물 다양성 협약」 정신의 실행,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교역에 관한 협정기구(CITES)」의 참다랑어등을 멸종위기 대상 동식물로서 지정하려는 움직임, 남위 40° 이남에서의 포경의 완전금지를 결의한 1994년 국제 포경위원회(IWC)의 움직임 등과 같이, 바야흐로 전 세계적으로 상업 어업의 확대 발전에 대한 규제 움직임만이 날로 팽배해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I.C.F.A는 비록 역사는 짧지만 명실공

히 전 세계 상업 어업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그 몫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입 회원국을 최소한 2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여, 상업 어업은 자원 고갈의 원흉이 아니라 인류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사업임과, 동물의 생명이나 보존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생존 자체가 더욱 중대하다는 사실을 내외에 널리 인식시켜, 무조건 규제 일변도·예방적 조치 일변도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자원 보존을 염두에 두되 자원활용도 병행하는 소위 '지탱 가능한 자원 이용'이 최선이며 필수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각국 정부, 국민, 환경단체 등과 대항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I.C.F.A는 내부적으로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외부에서 취득한 국제 동향 등을 신속히 회원국에 전파하여 필요한 국내 단독 또는 공동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종 국제 기구에 비정부 단체로서 옵서버 등록을 하여 꼭 필요 시에는 인원을 파견하여서라도 상업 어업의 존속 및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7차 회의 최종일에 제8차 I.C.F.A 회의는 New Zealand에서 갖기로 하였으며, 의장으로 대만의 Mr. Ming Chu (Chairman of China Fisheries Association), 수석 부회장으로 본인이 선임되어 차기 회의 개최시까지 1년간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년 후 차기회의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어 그 임무가 종료되며, 금년에 수석 부회장으로 선임된 대표가 차기 회의 의장으로 선출되는 관례에 따르면 2년 후 개최되는 회의시에 본인이 의장으로 9차 개최 예정지인 서울에서 회의를 주재하여 세계 수산계 발전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